무등산사무소-2205(2022. 5. 9.)호

행정대집행 영장

무단 점용 공작물 등 11개소 각 소유자 귀하

주소: 주소불상

2022년 4월 15일, 무등산사무소-1698(2022. 4. 15.)호로 귀하 소유의 무단 점용 공작물 등을 2022년 5월 5일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,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※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대집행 일시	행정대집행 책임자			행정대집행 비용(추산액)
	소속	직위(직급)	성명	
2022년 5월 30일 9시부터 종료시까지	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	자원보전과장 (일반직 3급)	최관수	총 비용: 금14,850,000원 (철거 · 폐기물 처리비용 등)

2022년 5월 9일

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